

의안번호	제 1010 호
의결 연월일	. . . (제 회)

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이숙애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2년 3월 7일

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(이숙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1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년 3월 7일  
발 의 자 : 이숙애, 박형용, 이상욱,  
이의영, 장선배, 허창원,  
임영은

1. 제안이유

- 복지현장에서 직·간접적으로 위험을 경험한 사회복지사 등은 소진(burn out) 등 위기 및 외상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, 이는 서비스의 질 저하로 연계되는 바,
- 이에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서비스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용어 정의에 “사회복지기관” 및 “안전 및 인권보호” 를 규정함. (안 제2조)
- 도지사의 책무에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4조)
- 지원 사업에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고,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7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및 규정 : 붙임
- 나. 조례안예고 : 2022. 3. 10. ~ 2022. 3. 15
- 다. 협의 : 복지정책과
- 라. 비용추계 : 붙임

##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“사회복지기관”이란 「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, 시설 및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.
3. “사회복지사 등”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.
4. “안전 및 인권 보호”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 수행 시 경험하는 신체적·언어적·정서적·성적 위협에 대한 예방 및 사후지원을 말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법인 및 시설 등”을 “사회복지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법 제3조 제3항”을 “법 제3조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단체 등”을 “사회복지기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기관 및 단체”를 “사회복지기관”으로 한다.

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

분) 제2호 중 “보수교육” 을 “교육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5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5호 및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

6.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

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의 제목 “(신변안전 및 신분 보호)” 를 “(안전 및 신분 보호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및 시설” 을 “사회복지기관” 으로, “범위 내에서 이를” 을 “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” 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 략)</li> <li>2. “<u>사회복지법인</u>”이란 「<u>사회복지사업법</u>」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</li> <li>3. “<u>사회복지시설</u>”이란 「<u>사회복지사업법</u>」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.</li> <li>4. “<u>사회복지사 등</u>”이란 「<u>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</u>」(이하 “<u>법</u>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.</li> </ol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“<u>사회복지기관</u>”이란 「<u>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</u>」(이하 “<u>법</u>”이라 한다)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, 시설 및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.</li> <li>3. “<u>사회복지사 등</u>”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.</li> <li>4. “<u>안전 및 인권 보호</u>”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 수행 시 경험하는 신체적·언어적·정서적·성적 위험에 대한 예방 및 사후 지원을 말한다.</li> </ol>
<p>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<u>다음 각 호의 법인 및 시설</u>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사회복지법인</u></li> <li>2. <u>사회복지시설</u></li> </ol>	<p>제3조(적용대상) ----- -- <u>사회복지기관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

<p>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 제1호  <u>각 목의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 법인</u></p> <p>4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6조에  <u>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</u></p>	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
<p>제4조(도지사의 책무) ①·②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4조(도지사의 책무) ①·② (현행  과 같음)</p> <p>③ <u>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  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 야 한다.</u></p>
<p>제6조(실태조사) ① 도지사는 <u>법 제3  조 제3항</u>에 따라 3년마다 사회복지  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 등에 관하여 조사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  공기관 또는 <u>제3조 각 호의 기관  및 단체</u>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  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 관계 공공기관 또는 <u>기관 및 단체</u> 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요청에 따라야 한다.</p>	<p>제6조(실태조사) ① ----- <u>법 제3  조제4항</u>-----  ----- 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 ----- <u>사회복지기관</u>-----  -----  ----- <u>사회복지기관</u>  -----  -----.</p>
<p>제7조(지원 사업) 도지사는 사회복지  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 추진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지원 사업) ① -----  -----  -----  -----.</p>

<p>1. (생략)</p> <p>2.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<u>보수교육 및 훈련 사업</u></p> <p>3. · 4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교육</u> -----</p> <p>3. ·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</u></p> <p>6. <u>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</u></p> <p>7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 <p>② <u>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8조(신변안전 및 신분 보호) ① <u>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및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 또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,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8조(안전 및 신분 보호) ① <u>사회복지기관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계법령

### □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

제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 12. 11.>

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,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·공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11.>

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·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 <개정 2018. 12. 11.>



# 비용추계서

## 1. 비용 발생 요인

-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,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한 종사자 대체 인력지원 및 교육·훈련 사업 등 추진

## 2. 비용 추계결과

### 가. 추계의 전제

- 사회복지사 등 근무환경 및 여건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(국비70%, 도비30%)
- 사회복지사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·훈련비 지원(도비100%)

연 번	사 업 명	지 원 내 역	
		지 원 내 용	예 산
계			493,005천원
1	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 체 인 력 지 원	경조사, 병가, 연가, 교육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 자의 업무공백 시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 파견	483,005천원
2	사회복지 법인시설 교 육 지 원	사회복지법인·시설 담당공무원 및 종사자 역량 강화, 안전·인권보호 교육·훈련 등 지원	10,000천원

나. 추계 결과 : 2022년부터 향후 5년간

다. 재원조달방안 : 국비 및 도비

## 3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##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	계	
세 입	493,005	507,495	522,420	537,793	553,627	2,614,340	
국 비	338,104	348,247	358,694	369,455	380,539	1,795,039	
도 비	154,901	159,248	163,726	168,338	173,088	819,301	
세 출	493,005	507,495	522,420	537,793	553,627	2,614,340	
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	483,005	497,495	512,420	527,793	543,627	2,564,340	
사회복지 법인·시설 교육지원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	
지원 비용	0	0	0	0	0	0	
재원 조달	493,005	507,495	522,420	537,793	553,627	2,614,340	
의존 재원	소 계	338,104	348,247	358,694	369,455	380,539	1,795,039
	보조금(국비)	338,104	348,247	358,694	369,455	380,539	1,795,039
	지방교부세	0	0	0	0	0	0
자체 수입	소 계	154,901	159,248	163,726	168,338	173,088	819,301
	지방세	154,901	159,248	163,726	168,338	173,088	819,301
	세외수입	0	0	0	0	0	0

※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(인건비)은 연도별 임금인상율은 3%로 가정